

—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고아읍지역은 도·농 복합지역으로 생활문화 기반시설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상당수준 저하되어
- 읍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고아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 매입(취득)
  - 위 치 : 고아읍 관심리 623-1번지 외 1필(잡종지)
  - 면 적 : 1,845㎡ (558평)

#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### 5. 검토의견

- 고아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으로서 고아읍은 도·농복합 지역으로 문화수준의 격차 해소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